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2
----------	-----

2023. 10. 18.(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3년 8월 29일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2023년 9월 7일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심사보류)

※ 보류 사유: 자료 보완 및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

바. 상정일자: 2023년 10월 16일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사. 주요내용

○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국장 주병호)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제13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제3항)
- 사용요건 확대(안 제4조제3항)
- 용도중복 삭제 및 명확화, 기금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 조항삭제(안 제6조제3항)
- 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 신설(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 논의 및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교육재정의 위축 등에 대비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내·외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지방교육재정과-5595(2022.10.31.)>에 따라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과 용도와 중복되는 부분, 포괄적인 용도 사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임.

* 중복 용도: '민자사업(BTL) 지급금 충당,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투자'

- 또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통해 안정화기금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요청하고 향후 지속적인 세수감소 추이에 따라 교부금 감액이 예상되어 사용요건을 직전년도 대비 세입 감소 시로 변경하여 현행 기준보다 기금 사용을 확대하는 것임

- <2022년 자치법규 실태조사 결과-예산과-257(2023.01.10.)>에 따라 법제처 의견제시(2015.08.20.회신 15-0207)를 반영하여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대신하던 기금 운용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임.²⁷⁾

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제3항은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²⁸⁾에서 정한 5년의 범위 이내이고,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2023.03.16.) 심의(별첨)를 거쳐 상위법의 조건을 충족함

- 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제3항 “적립”을 “전년도 말 직전 적립”로 변경하여 전년도 기금 사용액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며, 제3항제1호는 “최근 3년 평균”을 “직전년도”로 변경하여 2023년도 세수 결손,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등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하고자 사용 가능 여건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정안정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함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사용 요건 개정 시 사용가능한 기금 예측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입	보통교부금	2,122,839	2,393,862	3,368,314	3,144,912	2,855,580
	일반회계전입금	330,818	354,430	420,290	414,417	376,291
	합계	2,453,657	2,748,292	3,788,604	3,559,329	3,231,871
세입 3년 평균금액					2,996,851	3,365,408
1. (현행) 보통교부금+일반회계전입금 3년 평균 감소 금액					△562,478	133,537
2. (교육부 예시안) 보통교부금 감소 금액					223,401	289,332
3. (개정안) 보통교부금+일반회계전입금 직전년도 감소 금액					229,275	327,458

* 4월 기준 세수 결손 33.6조원으로 단순 계산하여 2,893억원 정도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액

○ 안 제4조제3항제3호는 “지방채상환 또는 임대형민자사업(BLT)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 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 로 변경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기금은 충청북도 특별회계로 진출하여 법 제31조²⁹⁾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과의 중복 부분을 삭제하고,

○ 안 제4조제3항제4호는 “장기간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³⁰⁾에 따른 사업 이외의 장기간”

2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3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으로, 제5호 “재정여건상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용어정비를 통한 기금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임.

- 안 제6조(기금의 운영 심의)제3항의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위원회 구성), 안 제8조(위원장의 직무), 안 제9조(위원회의 회의), 안 제10조(간사)를 신설하여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심의를 받던 부분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법제처 의견제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³¹⁾에서 정한 별도의 충청북도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31)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약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약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약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부칙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 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적정 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금 심의를 본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 부분을 부칙에 반영한 것임.

다. 종합의견

- 현재 세입 규모 감소 추이로 교육비특별회계 평균감소액이 3,752억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행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 금액을 ‘최소 3년 평균 금액’으로 운용할 경우 통합안정화기금을 약 1,335억 전출할 수 있으나, ‘직전년도 금액’으로 개정할 경우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약 3,274억을 전출할 수 있으므로 교육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재정안정화 계정 적용기간〉

구분	최근 3년 평균 금액	직전년도	개정준비중
적용 교육청	13개(현행)	4개(개정예정)	3개(대구, 강원, 울산)

- 다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시 교육청 자체 자원과 재원을 활용하여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자정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부 기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후,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정하여 재정안정화 통합계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등 향후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재정안정화
기금 사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별첨>

공감하는 미래교육, 동행하는 충북교육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신 충청북도교육감(예산과장)

(경유)

제목 제1회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 관련: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2023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일시 및 장소: 2023. 3. 16.(목) 14:00,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204호
나. 안건 및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심의결과
1	2022년도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개선안	원안가결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안	"
3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4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결산안	"
5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성과분석안	"
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
7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안	"

※ 재적위원 12명, 참석 위원 7명

- 붙임 1. 등록부 1부.
2. 회의록(별첨) 1부. 끝.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관인생략

★주무관 김선순 간사 박정희 부위원장 주병호 위원장 2023.03.22.
천별산

협조자

시행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 (2023. 3. 22.) 접수 예산과-2420 (2023. 3. 22.)
위원회-3

우 2863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산남동) / http://

전화번호 043-290-2134 팩스번호 043-290-2748 / Jessy4548@korea.kr / 공개

불편공문서 개선 요청 주소 (<https://baro.cbe.go.kr/pain>)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요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16. / 이윅희 의원

○ 수정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3항제2호라목은 이 조항이 없더라도 위원회 구성 시 충분히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을 신설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수정내용

- 안 제7조제3항제2호라목을 삭제함

8. 소수의견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적립”을 “전년도 말 기준 적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최근 3년 평균”을 “직전년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기간”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업 이외에 장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

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국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국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국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국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② (생략)</p> <p>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② (생략)</p> <p>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u>적립 총액의 100분의 50</u>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p> <p>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법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 금액이 <u>최근 3년 평균</u>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p> <p>2. (생략)</p>	<p>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2028년 12월 31일</u>-----.</p> <p>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u>전년도 말 기준 적립</u> -----</p> <p>-----.</p> <p>1. -----</p> <p>-----</p> <p>-----</p> <p>-----</p> <p>----- <u>직전년도</u> -----</p> <p>-----</p> <p>2. (현행과 같음)</p>

3. 지방채상환 또는 임대형민자사업(BTL)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
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재정여건상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생략)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②
(생략)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
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
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서 대신한다.

<신설>

3.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업 이외에
장기간-----

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
비 및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
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
을 인정하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
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

<신 설>

<신 설>

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

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신 설>

제7조 · 제8조 (생략)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

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삭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생략)</p> <p>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④·⑤ (생략)</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삭 제></u></p> <p>④·⑤ (현행과 같음)</p>